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65

발의연월일: 2025. 1. 21.

발 의 자: 송기헌 · 주철현 · 강훈식

김태년 • 박 정 • 백혜련

허 영・유동수・문진석

강득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1989년 정부의 '맑은 물 공급정책' 시행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인하여 강제 폐업을 당한 어업인의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, 현행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를환경처 고시 및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받지 못하게 된 자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환경처 고시 및 국무총리 지시 외에도 1989년 시행된 환경 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 처분을 받 은 어업인이 있음에도 현행법은 해당 어업인을 보상대상자로 명시하 지 아니함에 따라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손실보상 관련 심의 절차가 보류된 사례가 있음.

이에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어업인을 보상대상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, 해당 어업인 에 대하여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 본문).

법률 제 호

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본문 중 "(환경처 고시 제90-15호 및 제90-16호를 말한다) 및"을 "(환경처 고시 제90-15호 및 제90-16호를 말한다)과"로, "(국무총리지시 제1997-10호를 말한다)"를 (국무총리 지시 제1997-10호를 말한다) 및 호소 수질오염방지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(환경청장 지시 공문 수제31810-5755호를 말한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보상대상자의 범위) 이 법	제3조(보상대상자의 범위)
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가두리	
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법률	
제2835호 「내수면어업개발촉	
진법」 제7조제1항제1호의 양	
식어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	
로서 정부가 1989년부터 시행	
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	
으로 각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	
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전달된	
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<u>(환</u>	<u>(</u> 환
경처 고시 제90-15호 및 제90-	<u>경처 고시 제90-15호 및 제90-</u>
16호를 말한다) 및 상수원보호	<u>16호를 말한다)과</u>
를 위한 가두리양식장의 관리	
철저에 관한 지시(국무총리 지	<u>(국무총리 지</u>
<u>시 제1997-10호를 말한다)</u> 에	시 제1997-10호를 말한다) 및
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	호소 수질오염방지 협조 요청
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(수면	에 대한 회신 공문(환경청장
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	지시공문 수제31810-5755호를
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	말한다)
못한 경우를 포함한다)로 한다.	
다만, 보상대상자가 사망하거나	
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	

경우에는 해당 보상대상자의	
「민법」에 따른 재산상속인으	
로 한다.	